

---

#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입주지원 신청 안내서

---

2020. 09.

#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입주안내

## 1. 입주대상 및 자격

### 입주 대상 및 자격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 입주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동법 시행령 2조)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동법 시행령 4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자(기업)의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하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이 있을 경우
- 입주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자 또는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주 우대 대상자

-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지역특화산업 분야와 창업보육관의 중점 보육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 또는 기업인 경우
- 경남지역 창업지원 유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 업무교류협약 체결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인 경우

### 입주 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단,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 연장 (최초 입주협약시 6개월, 2회차 입주협약시 1년 6개월, 3회차 부터 1년 단위 입주협약 체결)
- \* 창업보육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

## 입주부담금

부담금	산출기준	납부시기	비고
임대료	무료	-	-
변상보증금	80,000원 / 3.3㎡	입주지원협약시	시설을 훼손하였을 시 변상하는데 사용, 졸업 및 퇴거시 보육실 점검 후 환불
환경미화비	월 8,000원 / 3.3㎡	입주를 기준으로 6개월씩 선납 (1년에 2회 납부)	청소, 건물영선 등 보육관 관리에 사용되는 간접 및 공동관리경비
전기료	월(보육실+공용분) 사용량 / 총사용량	익월 5일	-
수도료	보육실 면적 / 총 면적	익월 5일	-
인터넷 사용료	무료	-	100Mbps

\*입주부담금이 3개월 이상 채납되었을 경우 퇴거 조치됩니다.

## 입주 형태

- 창업기업 본점이 입주하여야 함(본점이 외부에 있는 연구소 등은 입주 불가)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이내, 초기 창업기업은 3개월 이내에 본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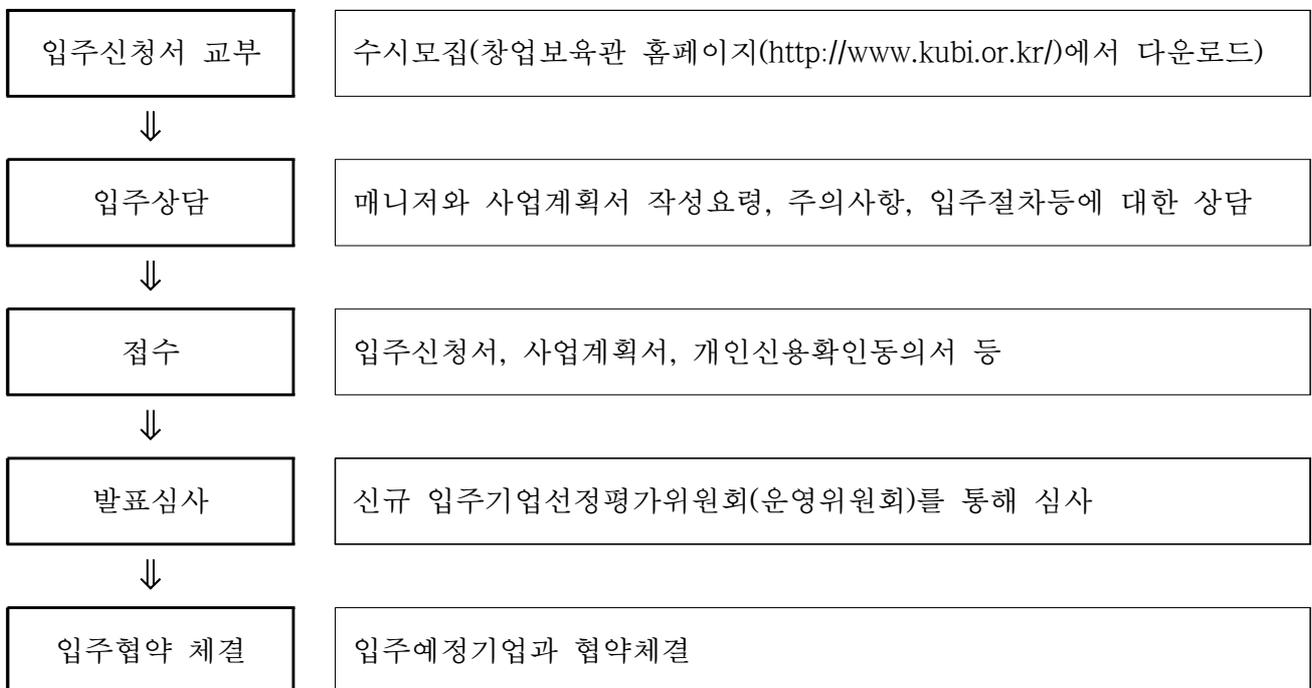
- 도시형 공장 등록 가능(도시형 공장 등록 이외의 경우 사무 및 연구 공간으로만 운용 가능)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 2. 입주절차 및 평가

### 입주신청절차



### 입주 신청시 제출 서류

-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참여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예비 벤처확인서 또는 벤처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특허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확보 증빙 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입주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창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가적 신념과 끈기</li> <li>2. 세계적 기술 및 시장흐름파악 안목</li> <li>3.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적 자질 및 능력</li> <li>4. 뛰어난 기술보유인력의 조직화 및 조율능력</li> <li>5. 실현성있는 적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현능력</li> <li>6. 사업단계별 소요자금의 산출 및 실현능력</li> </ol>	30	
기술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품의 독창성 및 신규성</li> <li>2. 모방기술이 아닌 원천기술의 확보</li> <li>3. 핵심기술부터 현물화까지 기술적Know-How 보유</li> <li>4. 기술 및 품질경쟁력 확보</li> <li>5.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li> <li>6.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li> </ol>	30	
사업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장회사 진입정도의 국내외 시장규모</li> <li>2. 독점적우위 확보가능성</li> <li>3.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li> <li>4.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li> <li>5. 경쟁업체의 유무 및 가격경쟁력</li> <li>6. 조기 순익실현가능성</li> </ol>	30	
사업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산시제품 제작완료, 양산체제의 구축</li> <li>2. 판로확보 및 매출발생</li> </ol>	10	

## 3. 입주기업 주요 지원 내용

###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경영, 비즈니스모델, 마케팅, 인사·조직관리, 회계·세무, 지식재산권, 인·허가, 법률, 기술자문 등 멘토링
- 비즈니스모델 개발, 경영전략수립, 마케팅 계획 수립, ISO인증, 품질인증 획득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지원(경남대학교 3D창의공학센터 연계)
-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금형제작 지원 등

### 마케팅 지원

- CI·BI 제작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홍보·인쇄물(브로슈어, 팜플렛 등) 제작 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 온라인 마케팅
- 입주기업 언론 홍보 기회 제공 등

#### 창업 관련 정보 제공

- 정부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정책 자금 등 관련 정보 제공
- 경남대학교 내 유관부서(산학협력단, UOK LINC+사업단, 인재개발처 등) 지원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등

#### 교육지원

- 입주기업 맞춤형 창업 관련 교육 지원

#### 기타지원

- 회의공간(1층 이노카페 외) 제공
- 업무보조 근로학생 제공(한국장학재단 지원, 매학기 초 신청 필수)

### 4. 문의처

#### 경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관 행정지원팀

- 전 화 / 055-249-2906, 249-2909, 249-2910
- 팩 스 / 055-245-3948
- 이 메 일 / kx10@kyungnam.ac.kr
- 홈페이지 / <http://www.kubi.or.kr/>
- 주 소 / 5173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